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99
----------	-------

발의연월일 : 2026. 9. 28.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김은혜
이현승 · 유용원 · 주호영
윤한홍 · 고동진 · 임종득
김재섭 · 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여 얻은 “이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 및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매매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로서의 매매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헤지(Hedge) 거래를 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병행 구조의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개별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여도 관련 헤지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거래의 실

질적인 순손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담이 실제의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환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와 연계된 매매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금액을 그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u>상환익</u>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황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상환익</u> ----- ----- ----- ----- ----- ----- ----- ----- ----- ----- ----- ----- ----- ----- ----- ----- ----- ----- ④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황에 따라 지급받

④ (생략)	<u>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와 연계된 매매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금액을 그 금액으로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